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8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박찬대 · 정일영 · 김교홍
유동수 · 맹성규 · 노종면
허종식 · 박범계 · 김준혁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추천”을 “추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서훈을 받은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훈의 <u>추천</u>)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조(서훈의 <u>추천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u> <u>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u> <u>2. 서훈을 받은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u> <u>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⑥ 그 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u>
<u><신 설></u>	

<p><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p>
--